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 3명(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과 합의되었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10.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지령·관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6호 중 “중앙 및 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2항제6호 중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를 “소방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5”를 “2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을 “3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1”을 “49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38”을 “431”로 하

며, 소방준감 이하 “436”을 “42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 정원 2명(소방준감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명(소방준감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① (생략)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u><신설></u>	8. <u>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u><신설></u>	9. <u>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u>
<u><신설></u>	10. <u>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11. <u>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지령·관제에 관한 사항</u>
제11조(119대응국) ① (생략)	제11조(119대응국) ① (현행과 같음)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중앙 및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u>	16. <u>시·도</u> ----- ----- -----
17. ~ 29. (생략)	17. ~ 29. (현행과 같음)
제12조(화재예방국) ① (생략)	제12조(화재예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생략)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u> 7. <u>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u> 8. ~ 13. (생략) 14.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5.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6. ~ 18. (생략)	②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u> 19.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소방항공기</u> ----- ----- ----- <u><삭제></u> 8.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16. ~ 18.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267</u>	<u>274</u>	+7
소방공무원 계	<u>231</u>	<u>236</u>	+5
·	·	·	
·	·	·	
소방준감 이하	<u>225</u>	<u>230</u>	+5
일반직 계	<u>36</u>	<u>38</u>	+2
3급 또는 4급 이하	<u>30</u>	<u>32</u>	+2
·	·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01</u>	• <u>494</u>	-7
소방공무원 계	• <u>438</u>	• <u>431</u>	-7
소방준감 이하	• <u>436</u>	• <u>429</u>	-7
•	•	•	
•	•	•	